

I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대상

- 공급위치 : 익산시 부송4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블럭 (부송동)
- 공급개요 : 지하2층~지상16~20층 8개동 총 7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구분	공급세대수	주택공급면적(m ²)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84A	501	84.5734	25.1422	109.7156
84B	151	84.5524	25.2902	109.8426
84C	93	84.5914	25.8969	110.4883
계	745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괄호안의 수는 예비 대상자 수)

(단위:세대)

구분	84A	84B	84C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	27 (38)	7 (10)	4 (6)
	장기복무 제대군인	2 (3)	-	-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2 (3)	-	-
	의사상자 등	2 (3)	-	-
	북한이탈주민	1 (2)	1 (2)	1 (2)
	납북피해자	1 (2)	1 (2)	-
	장애인	27 (38)	7 (10)	4 (6)
	다문화가족	5 (7)	3 (5)	2 (3)
	우수선수	2 (3)	-	-
	우수기능인	2 (3)	-	-
	중소기업 근로자	5 (7)	3 (5)	2 (3)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2 (3)	-	-
계		78 (112)	22 (34)	13 (20)
				113 (166)

■ 분양일정

구 분	일 자 (예정)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2023년 1월 6일(금)(예정)	견본주택 및 당사홈페이지(http://익산부송데시앙.com) 청약홈(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2023년 1월 16일(월)(예정)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첨자 발표	2023년 1월 26일(목)(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당첨자 서류접수	2023년 1월 27일(금) ~2023년 2월 5일(일)(예정)	당사 견본주택 : 전북 익산시 부송동 679-4
계약 기간	2023년 3월 13일(월) ~2023년 3월 17일(금)(예정)	당사 견본주택 : 전북 익산시 부송동 679-4

-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익산 부송 데시앙'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의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청약신청일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

■ 견본주택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679-4 익산 부송 데시앙 견본주택
- 전화번호 : 063-833-1566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6.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금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및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3.1.6. 예정]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58조에 의거 기준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되어 그 제한기간 (청약을 신청하려는 지역에 따라 기간 상이, 최대 1년) 내에 있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의거 행정기간 혹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매행위 제한 혹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어 그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 ※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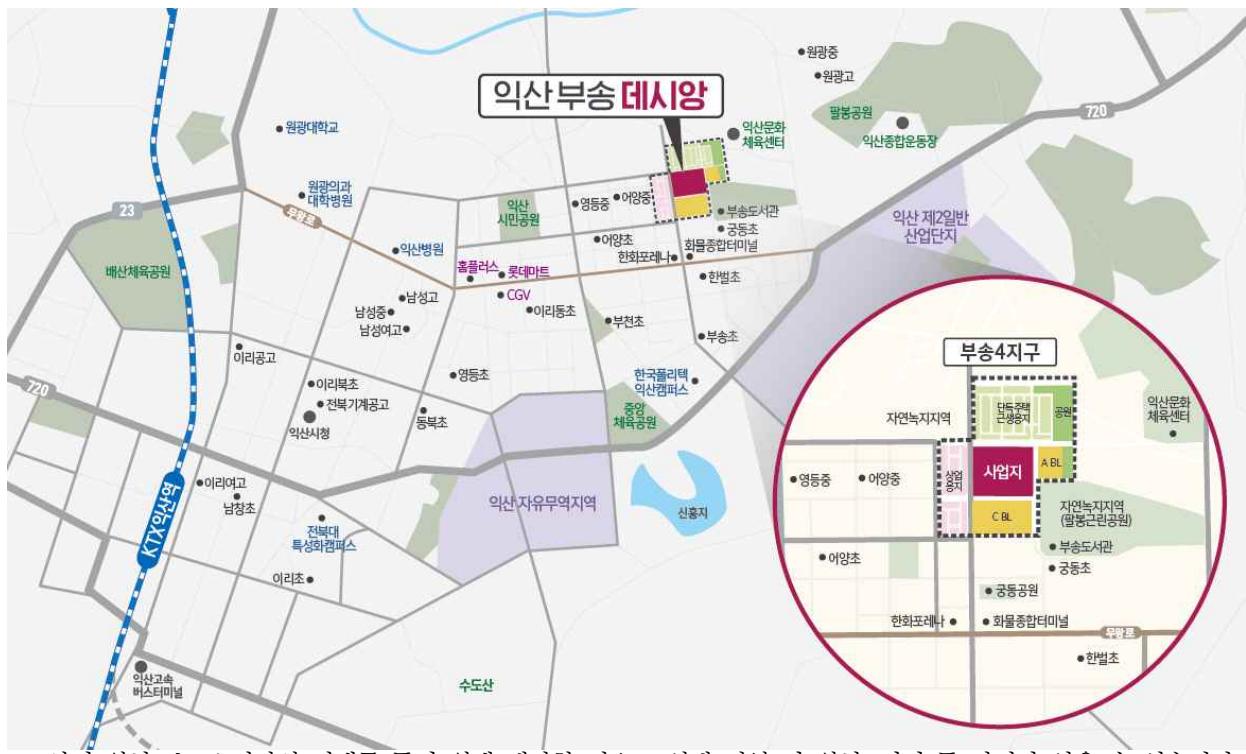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우선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가 특별공급 신청일(2023.1.16.(월) 예정)에 인터넷 (청약홈 홈페이지)을 통하여 반드시 청약 접수 하여야 하며, 미접수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부동산원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첨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동·호배정은 동·충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동·호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특별공급 당첨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 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 (개별통지 불가, 본인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청약관련 제한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 ※ **전매제한** : 당첨자발표일로부터 3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시행령 별표3)
 - ※ **재당첨제한** :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특별공급간(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중복신청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및 모두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자 추첨(배정세대수의 140%) 여부는 기관이 결정하며, 예비로 추첨받은 자도 청약 접수 결과 해당 주택형의 타 유형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 시 당첨자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동일세대 중복청약으로 동시에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 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제53조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위치도 공급위치 : 익산시 부송4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블럭 (부송동)



※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 지역 및 위치, 거리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감도



※ 상기 조감도는 인·허가 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행 : 전북개발공사 / 시공 : (주)태영건설 컨소시엄